

부품안전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기간	45일
신청인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	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/팩스번호	
	신청인 구분	☐ 제조업자 ☐ 수입업자		
부품안전 인증대상	승강기안전부품명		수량	
	기본모델명		정격전압/전류 (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)	
	파생모델명 (필요시 별지 사용)		모델구분 (필요시 별지 사용)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
인증을 신청합니다.

의
아
그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[]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, 지정인증기관의 장
[] 행정안전부장관

귀하

붙임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2.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.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(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) 4.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5.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(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) 6. 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	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 절차

